

사채원리금 지급대행 계약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이하"위탁자"이라 한다)가 (주)하나은행 지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 사채의 원리금 지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p> <p>제1조(대행업무의 수탁) 위탁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지급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락한다.</p> <p>1~2 <생 략></p> <p>3. 사채의 <u>권면총액</u> : 4~5 <생 략></p> <p>6. 사채의 <u>발행권증</u> : 7~10 <생 략></p> <p><u>11. 전환조건</u></p> <p>12.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u> :</p> <p>13. <u>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u> :</p> <p>14. <u>원리금 지급보증기관</u> :</p> <p>15. <u>연체이자</u></p>	<p>○○(이하"위탁자"라 한다)가 <u>주식회사 하나은행</u> ○○ 지점(이하"수탁자"라 한다)에 <u>○○○○ 사채(이하 "본 사채"라 한다)</u>의 원리금 지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p> <p>제1조 <좌 동></p> <p>1~2 <좌 동></p> <p>3. 사채의 <u>전자등록총액</u> : 4~5 <좌 동></p> <p>6. 사채의 <u>거래단위</u> : 7~10 <좌 동></p> <p><u>11. 연체이자</u></p> <p><u>12. 발행방식</u> : "본 사채"는 공모(또는 사모)에 의한 발행으로 「<u>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u>」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한다.</p> <p><u>13. 사채관리회사</u> :</p> <p><u>14. 사채의 전자등록기관</u> : 한국예탁결제원</p> <p><u>15. 기타</u> :</p>	<p>용어 명확화</p> <p>공사채등록법 폐지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 시행 (약칭,전자증권 법)</p>

<p>제2조(업무취급장소) <u>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탁자 및</u> <u>에서</u> <u>취급한다.</u></p>	<p>제2조(업무취급장소) 수탁자는 대행업무 및 <u>상환청구 접수를 취급하며</u> 수탁자의 <u>○○○지점을 주된 업무취급장소로 한다.</u></p>	<p>업무 명확화</p>
<p>제3조(업무처리의 준거 기준)</p> <p>① 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계약 각항 이외에 관계법, 수탁자의 규정 및 위탁자의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p> <p>② 전항의 경우 위탁자는 내규를 계약 체결 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3조(업무처리의 준거 기준)</p> <p>① 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계약 각항 이외에 관계법, 수탁자의 <u>내규</u> 및 위탁자의 내규에 따라 <u>처리하며, 수탁자의 내규와 위탁자의 내규가 충돌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u></p> <p>② 전항의 경우 위탁자는 <u>그</u> 내규를 계약 체결 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좌동></p>	<p>업무 명확화</p>
<p>제4조(장부 및 서류의 인도)</p> <p>① 위탁자는 대행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수탁자의 요구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p> <p><u>1. 사채의 발행에 관한 명세표 및 사채의 건양</u></p> <p>2. 사채원리금 지급 원부 <신설></p> <p>3. 인감부(무기명식 사채인 경우는 제외)</p> <p>4. <u>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u>, 발행회사의 정관, 등기부등본</p> <p>5. 사고관계 문서</p> <p>6. 기타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p> <p>② 수탁자는 전항의 장부 및 서류를 대행업무 종료 후 위탁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 위탁자에게 인도한다.</p>	<p>제4조(장부 및 서류의 인도)</p> <p>① 위탁자는 대행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수탁자의 요구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p> <p><u>1. 사채의 발행에 관한 명세표</u></p> <p>2. 사채원리금 지급 원부</p> <p><u>3. 소유자증명서</u></p> <p>4. 인감부(무기명식 사채인 경우는 제외)</p> <p><u>5. 발행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u>, 발행회사의 정관, <u>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u></p> <p><u>6. 사고관계 문서</u></p> <p><u>7. 기타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u></p> <p>② 수탁자는 전항의 장부 및 서류를 대행업무 <u>종결 또는</u> 위탁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 위탁자에게 인도한다.</p>	<p>용어 정비</p> <p>체하</p> <p>체하, 명칭변경</p> <p>체하</p> <p>체하</p> <p>명칭 변경</p>
<p>제5조(지급대상자) 사채원리금의 지급대상자는 <u>다음 각호와 같다.</u></p> <p><u>1. 무기명식 사채에 대하여는 사채권 및 이권의 소지자</u></p> <p><u>2. 기명식 사채에 대하여는 갑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채권자 또는 등록질권자</u></p> <p><u>3. 등록식 사채에 대하여는 갑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채권자 또는 등록</u> <u>담보권자</u></p>	<p>제5조(지급대상자) 사채원리금의 지급대상자는 <u>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권리자로 확인된 사채권자 또는 등록 담보권자로 한다.</u></p>	<p>전자증권법 반영(제38조 1항, 제39조)</p>

제6조(사채원리금 지급자금의 인도)

- ① "위탁자"는 당해 사채원리금 지급대전(지급할 원리금 상당액)을 반드시 지급결제일 미결제 통보시각 이전까지 수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본부 집중의 경우 제7조에서 지정한 사채원리금지급 자동이체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 ② "위탁자"는 입금 사실을 반드시 "수탁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신 설>

제7조(출금계좌 지정 및 담당자 지정)

- ① 출금계좌의 지정
 - 1. 위탁자는 사채원리금지급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당행에 개설된 아래의 요구불계좌를 출금계좌로 지정하고 위탁자의 사채원리금 지급 용도로 사용한다.
 - 2. 사채원리금 출금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지정용도
		사채원리금 출금

- 3.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수수료 출금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지정용도
		사채원리금지급대행 수수료 출금

- 4. 위탁자는 사채원리금출금계좌 및 대행수수료 출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담당자의 지정: "위탁자"는 사채원리금 입금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담당자 변경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자 성명	핸드폰 번호 (SMS 교환안내 수신번호)	회사 전화번호

제6조(사채원리금 지급자금의 인도)

- ① 위탁자는 당해 사채원리금 지급**자금**(지급할 원리금 상당액)을 반드시 **각** 지급결제일의 미결제 통보시각(**14시**) 이전까지 수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는 입금 사실을 반드시 수탁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지급자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조(출금계좌 지정 및 담당자 지정)

- ① 출금계좌의 지정
 - 1. 위탁자는 사채원리금지급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수탁자에 개설된 아래의 요구불계좌를 출금계좌로 지정하고 위탁자의 사채원리금 지급 용도로 사용한다.
 - 2. 사채원리금 출금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지정용도
		사채원리금 출금

- 3.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수수료 출금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지정용도
		사채원리금지급대행 수수료 출금

- 4. 위탁자는 사채원리금출금계좌 및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수수료 출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담당자의 지정: "위탁자"는 사채원리금 입금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담당자 변경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자 성명	핸드폰 번호 (SMS 교환안내 수신번호)	회사 전화번호

업무 명확화

업무 명확화

명칭 변경

(오)탈자 정정

명칭 변경

문구정비

제8조(지급대행 불능사실 통보)

위탁자가 원리금 지급기일의 영업마감 시각 2시간 전까지 지급할 자금을 제7조 1항에서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는 지급불능의 사실을 지급보증기관(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탁기관에(있는 경우에 한함) 즉시 통보한다.

② <신 설>

제9조(사채권자의 확정)

① 사채원리금의 수령권자가 확정된 때에는 위탁자는 지급원부를 작성하여 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지급원부를 제출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령권자의 인감부를 첨부하여 지급위탁서를 제출한다.

③ 본 사채가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사채 및 등록필증 일괄등록방식인 경우 제1항 및 제 2하의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수탁자"의 승인하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수탁자"에 대한 통보로 갈음한다.

제10조(지급필 통지의 갈음)

① 수탁자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자지급필 통지서에 이자지급을 필한 이권을 첨부하거나, 등록사채인 경우에는 출납인을 날인한 이자영수증을 첨부하여 차회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일괄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확인증을 교부한다.

② 수탁자가 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필 통지서에 원금상환을 필한 채권을 첨부하거나 등록사채인 경우에는 출납인을 날인한 이자영수증을

제8조(지급대행 불능사실 통보)

① 위탁자가 **각** 원리금 지급기일의 **영업마감** 시각 **2시간 전(14시)**까지 지급할 자금을 **수탁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때(본부집중의 경우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는 지급불능의 사실을 지급보증기관(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탁기관(있는 경우에 한함)에 즉시 통보한다.

② **전 항의 통보를 한 후에 위탁자가 지급할 자금을 인도한 때(본부집중의 경우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한 때)**에는 수탁자는 그 사실을 지급보증기관(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탁기관(있는 경우에 한함)에 즉시 통보한다.

제9조(사채권자의 확정)

①~③ <삭 제>

"본 사채"의 사채원리금 수령권자는 전자등록기관이 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원리금 교환청구에 기재된 권리자로 한다. 수탁자는 원리금교환청구에 기재된 권리자를 사채원리금 수령권자로 확정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별도의 지급원부나 지급위탁서를 제출받지 아니한다.

제10조(지급필 통지의 갈음)

① 수탁자가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경우, 수탁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사채원리금 이체확인서(이체영수증 등)를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지급필 통지로 갈음한다.**

② **본부집중의 경우 사채원리금은 위탁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자동인출 처리되는 바, 위탁자는 지급필 통지 내역을 출금계좌의 인출내역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급필 통지로 갈음한다.**

업무 명확화

전자증권법에 따른 업무절차 개정

전자증권법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변경 및 내용 간소화

<p><u>첨부하여 차회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일괄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확인증을 교부한다.</u></p> <p>③ <u>"수탁자"는 사채원리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며, "위탁자"는 지급필 통지 내역을 출금계좌의 인출 내역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급필 통지로 갈음한다.</u></p> <p>④ <u>본 건 사채가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사채 및 등록필증 일괄등록방식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수탁자"의 교부의무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의 사채원리금 이체확인서(이체영수증) 교부로 갈음한다.</u></p> <p>제11조(통지 또는 신고사항)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3 <생 략></p> <p><u>4. 사채의 등록이 있는 때</u> 5~8 <생 략></p> <p>9. 사채에 대하여 질권, 신탁의 설정, 변경, 말소 등의 등록이 있는 때</p> <p><u>10. <신 설></u> <u>11. <신 설></u></p>	<p>제11조(통지 또는 신고사항) <좌 동></p> <p>1~3 <좌 동></p> <p>4. 사채의 <u>전자등록</u>이 있는 때 5~8 <좌 동></p> <p>9. <u>전자등록된</u> 사채에 대하여 <u>질권의 설정·말소, 신탁재산의 표시·말소의 전자 등록이 있는 때</u></p> <p><u>10. 전자등록된 사채가 압류 또는 가압류 된 때</u></p> <p><u>11. 사채의 이율, 원리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u></p>	<p>공사채등록법 폐지 및 전자증권법 시 행에 따른 명 칭 변경 및 내 용 추가</p>
---	--	--

<p>제12조(수탁자의 면책)</p> <p>① <u>전조의</u> 통지 또는 신고가 있기 전에 수탁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②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도 발견하지 못한 위조 또는 변조 <u>채권에 의하여</u> 지급한 원리금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③ <u>자동이체 지정계좌</u>에 예금 압류, 지급정지 등 권리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④ <u>사채원리금 지급 기일에 "위탁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사채원리금 출금 계좌에서</u> 사채원리금지급 이외의 사유로 지급되어 계좌의 잔고가 당해 사채원리금 지급대전보다 적은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12조(수탁자의 면책)</p> <p>① 제11조의 통지 또는 신고가 있기 전에 수탁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②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도 발견하지 못한 위조 또는 변조 채권이나 증표(원리금지급 영수증 등)에 의하여 지급한 원리금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③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사채원리금 출금계좌에 예금 압류, 지급정지 등 권리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④ 사채원리금 지급 기일에 위탁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채원리금 출금계좌에서 사채원리금지급 이외의 사유로 지급되어 계좌의 잔고가 당해 사채원리금 지급대전보다 적은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문구 명확화</p> <p>내용 추가</p> <p>문구 명확화</p> <p>문구 명확화</p>
<p>제13조 <생략></p> <p><신설></p>	<p>제13조 <좌동></p> <p>제14조(원천징수) 위탁자가 발행하는 사채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발행되는 경우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p>	<p>내용 추가 (업무명확화)</p>
<p>제14조(경비부담) <생략></p>	<p>제15조(경비부담)</p>	<p>체하</p>

<p>제15조(계약의 종결) <생략></p> <p>제16조(종결업무)</p> <p>① 수탁자가 대행업무를 종결한 때에는 종결통지서의 원리금 지급에 관한 계산서를 미지급 자금과 함께 종결일 익일부터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교부한다.</p> <p>② 위탁자는 전항이 종결통지서 접수 즉시 대행종료 확인증 및 수령증을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의 소정방법에 따라 다음 <u>각항</u>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결 년 월일 2. 종결되는 대행업무의 내용 3. 차후 대행업무의 취급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p><신설></p> <p>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위탁자, 수탁자 각 1통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제16조(계약의 종결)</p> <p>제17조(종결업무)</p> <p>① 수탁자가 대행업무를 종결한 때에는 종결통지서의 원리금 지급에 관한 계산서를 미지급 자금과 함께 종결일 익일로부터 ○○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교부한다.</p> <p>② 위탁자는 전항이 종결통지서 접수 즉시 대행종료 확인증 및 수령증을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의 소정방법에 따라 다음 <u>사항</u>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결 년 월일 2. 종결되는 대행업무의 내용 3. 차후 대행업무의 취급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p>제1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p> <p>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위탁자<u>와</u> 수탁자<u>간</u> 각 1통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체하</p> <p>체하</p> <p>내용 추가 (업무명확화)</p> <p>문구 정비</p>
--	--	---

